


정관


Version 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SK 케미칼 빌딩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목 차

제1장 총칙-----	6
제1조 (상호)-----	6
제2조 (목적)-----	6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8
제4조 (공고방법)-----	8
제2장 주식과 사채-----	9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8
제6조 (일주의 금액)-----	9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9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9
제8조의1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9
제9조 (무의결권부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9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0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12
제12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14
제13조 (동등배당)-----	15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15
제15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16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6
제17조 (사채의 발행)-----	17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17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8
제19조의1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18
제3장 주주총회-----	18
제20조 (소집시기)-----	18
제21조 (소집권자)-----	19
제22조 (소집통지 및 공고)-----	19
제23조 (의장)-----	19
제24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20
제25조 (주주의 의결권)-----	20
제26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0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20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제28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20
제29조 (주주총회 의사록)-----	21
제4장 이사·이사회-----	21
제30조 (이사의 수)-----	21
제31조 (이사의 선임)-----	21
제32조 (이사의 임기)-----	21
제33조 (이사의 보선)-----	22
제34조 (대표이사의 선임)-----	22
제35조 (이사의 직무)-----	22
제36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22
제37조 (이사회 결의방법)-----	23
제38조 (이사회 의사록)-----	23
제39조 (위원회)-----	23
제40조 (경영위원회)-----	24
제41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4
제42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24
제5장 감사위원회-----	25
제43조 (감사위원회)-----	25
제44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25
제45조 (감사록)-----	26
제6장 계산-----	26
제46조 (사업년도)-----	26
제47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및 비치)-----	26
제48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27
제49조 (이익금의 처분)-----	27
제50조 (배당금의 지급)-----	28
제50조의 1 (중간배당)-----	28
제51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28
제7장 기타-----	29
제52조 (규정의 제정 등)-----	29
제53조 (안전보건계획)-----	29
제54조 (규정 외 사항)-----	29
부칙-----	29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전문

경영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구성원 행복이다.

경영활동의 주체인 구성원은 ‘구성원 행복’ 과 함께 ‘이해관계자 행복’을 키워 나감으로써 지속적 행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이를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한다.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터전이자 기반인 회사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구성원은 구성원 행복과 함께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 나간다.

이해관계자 행복을 위해 창출하는 모든 가치가 곧 사회적 가치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키워나가며,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고객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신뢰를 얻으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에 기반한 선순환적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

주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나간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보호, 고용창출, 삶의 질 제고,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모든 구성원은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03.25>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제 1 장 총칙


제1조 (상호)

본 회사의 상호는 SK 케미칼 주식회사라 칭하고, 한글로는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로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SK Chemicals Co., Ltd.(이하 “회사”)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합성수지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
2. 탄소섬유, 복합재료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
3. 무기재료(無機材料)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
4. 농약 및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
5. 각종 계면활성제, 합성세제 등 생활용품 및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
6. 정보전자소재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
7. 정밀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
8. 식품, 식품첨가물, 인삼제품 및 그 관련제품들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
9. 의약품, 의약부외품, 수의약품(獸醫藥品), 화장품, 의료용품, 의료용구, 위생용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 및 수출입, 소분매매업 및 건강(health care)관련사업
10. 폴리에스텔섬유, 재생섬유(아세테이트섬유 등)의 원료와 그 관련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11. 포리에스틸섬유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
12. 재생섬유(아세테이트섬유 등)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
13. 직편물 및 의류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염색, 판매 및 수출입
14. 건축용 자재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
15.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투자 또는 사업지원
16. 전자상거래 사업,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사업
17.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18. 전문건설업, 건축 및 토목공사업
19. 환경측정 대행업 및 환경관리 용역업
20. 환경오염방지시설업
21. 고순도 유기용매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 및 에탄올 소매업
22. 바이오디젤 기타 석유대체연료, 그 원료, 혼합물, 부산물 및 생산플랜트 설비의 제조, 재배, 저장, 가공, 판매 및 수출입
23. 상기 각호의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독극물, 메탄올 등)의 정제, 가공, 판매, 수출입과 유틸리티(질소, 압공(壓空), 스팀 등)의 판매
24. 상기 각호의 사업에 관계되는 기계시설, 기기의 제작, 판매 및 수출입
25. 상기 각호의 사업에 관계되는 기술용역사업
26. 화섬공업, 화학공업에 대한 투자 및 상기 각호의 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27. 전산시스템의 분석, 설계, 개발, 통합, 교육, 운용 등을 포함한 전산시스템 용역의 제공 및 판매
28. 건강보조식품의 제조 및 가공판매업
29. 의료기관 운영 및 투자에 관한 사업
30. 자동차부품 및 그 관련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 관련사업
31. 상기 각 호와 관련된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임대업
32. 상기 각호 사업 추진, 제품 제조 및 연구에 필요한 시설의 공사 및 운영
33. 상기 각호와 관련되거나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 및 투자


제3조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 ① 회사는 본점을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 ② 회사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kchemical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인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과 사채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천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1)주의 금액은 금 5천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3,038,522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개정 2019.03.25>

제8조의 1(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①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상 전자등록 의무가 없는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전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3.25>
- ② <삭제 2022.03.28>

제9조 (무의결권부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기명식 우선주식은 비참가적, 비누적적, 무기한부, 의결권 없는 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총수는 1천만주로 한다.
- ②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 ③ 제 2 항의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유무상 증자 시에는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단, 이사회는 유무상 증자 시 보통주식 한 종류만 발행을 결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을 배정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해당 사업 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 1 항 제 3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 ⑦ 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 30 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개정 2021.03.31>
-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③ 근로복지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 취득할 주식을 합산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 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제공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행사기간 동안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Issue Date: 2024/03/26

1. 회사가 파산·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서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개정 2022. 03.28.>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의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개정 2019.03.25>
-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 ① 주주, 등록질권자 및 그들의 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 14 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은 제 8 조의 2 제 1 항 본문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3.25>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은 제 8 조의 2 제 1 항 본문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3.25>
- ③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신고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⑤ 전 각항의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삭제 2020.03.25)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5>

제17조 (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제 1항의 사채의 액면총액 중 1천5백억원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5백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제 1항 경우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제 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제 1 항의 사채의 액면 총액 중 8 백억원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2 백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제 1 항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제 1 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의1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관련 법령 상 전자등록 의무가 없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전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3.25>

제 3 장 주주총회

제20조 (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제21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제 35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국민일보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개최한다.

제23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제 35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6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9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사 · 이사회

제30조 (이사의 수)


- ① 회사의 이사는 10 인 이하로 한다.
- ② 회사는 이사 중 일부를 사외이사로 하며, 사외이사의 수, 자격요건, 기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개정 2022.03.28>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Issue Date: 2024/03/26

제33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의 임기 중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법 제 383 조 제 1 항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거나, 상법 제 542 조의 8 제 1 항에서 정한 사외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후임 이사를 보결 선임한다.
- ② 전항에 의하여 보결 선임된 후임 이사의 임기는 전임 이사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4조 (대표이사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35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상법,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 ③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사전에 지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분기 1 회 이상,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 ④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제37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 (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3. 경영위원회

4. 기타 필요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6 조, 제 37 조 및 제 3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경영위원회)


- ① 이사회 결의로 제 39 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 ③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1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① 이사회 결의로 제 39 조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2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제 5 장 감사위원회

제43조 (감사위원회)

-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선임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44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위원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9.03.25>
- ⑦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6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45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계산


제46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사의 최초 사업년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및 비치)

-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의 체계정을 결산한 후, 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 ②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5>

제49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총수익에서 총손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순이익금으로 하고, 이에 전년도 이월금을 합하여 다음 방법에 따라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Issue Date: 2024/03/26

제50조 (배당금의 지급)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 ③ 이익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의 1 (중간배당)

-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 ②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본조신설 2022.03.28>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제51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 ③ 미지급배당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기타

제52조 (규정의 제정 등)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규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53조 (안전보건계획)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본조신설 2020.03.25>


제54조 (규정 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회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제2조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

회사는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며, 동 분할로 인하여 회사에 이전되는 재산 및 그 가액 등에 대하여는 2017년 10월 27일자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3조 (정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제4조(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회사의 설립 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로서 재임 중이던 경우, 그 임기는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로서의 잔임 기간을 적용한다.

부칙 <2019.03.25 개정>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 제 8 조의 2, 제 14 조, 제 15 조 및 제 19 조의 2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3.25 개정>

본 정관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3 조의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Title	
	정관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6.0
	Issue Date: 2024/03/26	

부칙 <2021.03.31 개정>

본 정관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3.28 개정>

본 정관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3.26. 개정>

본 정관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